

변경대비표

[신탁계약서]

1. 펀드명 : 하나더넥스트 TDF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5 년 06 월 24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 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6. (생략) (신설)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6. (좌동) 17. <u>종류 C-P2I 수익증권 :</u> <u>최초 가입시 50 억원 이상</u> <u>매입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u> <u>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u> <u>퇴직연금 사업자(단,</u>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u> <u>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u> <u>을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u>
제 10 조(수 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생략)-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16.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좌동)-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16. (좌동) <u>17. 종류 C-P2I 수익증권</u>
제 39 조(보 수)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생략) (신설)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좌동) [종류 C-P2I 수익증권]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부칙	-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5 년 06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

[간이투자설명서]

1. 펀드명 : 하나더넥스트 TDF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5 년 06 월 24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기타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신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u>- C-P2I : 최초 납입 시 50 억원 이상 가입 가능</u>
--	--	--	---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1. 펀드명 : 하나더넥스트 TDF2030 증권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5 년 06 월 24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신설)	<u>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P2I</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u> <u>퇴직연금(고액 50 억원이상)</u> <u>펀드코드: EM115</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신설)	<u>집합투자기구의 명칭: C-P2I</u> <u>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u> <u>퇴직연금(고액 50 억원이상)</u> <u>펀드코드: EM115</u>
6.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신설)	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통하여 가입한 자는 제외) <u>- C-P2I : 최초 납입 시 50 억원 이상 가입 가능</u>

11. 가.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신설)	<u>종류별: C-P2I</u> <u>가입자격: 최초 가입시 50 억원</u> <u>이상</u> <u>매입한</u>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u> <u>퇴직연금 가입자</u> <u>및 퇴직연금 사업자(단,</u>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u> <u>사정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u> <u>션)을 통해 가입한 자는 제외)</u>
13.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신설)	<u>종류명 명칭: C-P2I 수수료미징구-</u> <u>오프라인-</u> <u>퇴직연금(고액 50 억원이상)</u> <u>선취판매수수료: 없음</u> <u>후취판매수수료: 없음</u>
13.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신설)	<u>종류명명칭: C-P2I 수수료미징구-</u> <u>오프라인-</u> <u>퇴직연금(고액 50 억원이상)</u> <u>집합투자업자보수: 0.100</u> <u>판매회사보수: 0.100</u> <u>수탁회사보수: 0.030</u>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15</u> <u>총보수: 0.245</u> <u>총보수비용: 0.369</u>
13.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종류 C-P2I 수익증권 신설	(신설)	(변경 후 1)

(변경 후 1)

종류형 명칭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수수료 및 보수 · 비용	25	51	79	139	316
	퇴직연금(고액 50 억원이상)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38	78	119	209	476